

# 2019년 부산시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재공고 (개정안)

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체류기간 확대와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「2019년 부산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」의 지급기준을 사업의 취지에 맞게 유치건수가 많은 업체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하여 비례배분 적용방식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 ※ 개정사항 빨간색 체크

2019년 6월

## 부 산 관 광 공 사 사 장

### ①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

■ 기 간 : '19. 1. 1. ~ 12. 6.

■ 대 상 : 관광진흥법 제3조 일반여행업체

※ 일반여행업 :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

■ 지원조건

- 외국인 관광객을 부산시내 관광숙박업체에서 1박 이상 숙박시키고, 분기별 해당 유치실적이 100명 이상  
(단, 부산지역업체의 경우 분기별 유치실적 30명 이상)

※ 부산시내 관광숙박업체(아래 ①~② 중 한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곳)

①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체로 등록된 시설(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

- [www.busan.go.kr](http://www.busan.go.kr)(정보공개-사전공표정보-관광숙박시설 현황 리스트)

② 일반 숙박업체는 한 건물 기준 객실규모 100실 이상, 조식제공 가능, 2개 이상 부대 시설 갖춘 시설

- 부산 시내 숙박 1박당 부산체류 증빙서류 제출 필수

(숙박 인보이스와 결제 영수증 제출 필수 → 증빙서류간 금액 일치)

-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증빙 필수

## ② 인센티브 비례배분 적용

■ 기 간 : 19년도 2사분기부터 적용

■ 비례배분 계산법 : (업체신청금액×집행가능예산) ÷ 총 업체신청금액

■ 개정사항 :

- 1) 1차 비례배분적용 후 업체 한도 최대금액 전액 지원
- 2) 1)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한 지원금 잔액으로 2차 비례배분 적용
- 3) 2차 비례배분 적용 후 잔액 발생시 2) 반복

■ 주의사항 : 증빙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추가서류 요구 없이 지급대상 제외

변경 전 공고	개정 공고
[업체별 최대금액 적용] 최대 부산 15,000천원, 서울 10,000천원 ↓ [비례배분 적용] ↓ [인센티브 지급]	[신청금액 기준 1차 비례배분 적용] ↓ [1차 지급액에서 최대금액 적용] 업체 최대금액 “전액 지원” 부산 15,000천원, 서울 10,000천원 ↓ [2차 비례배분 적용] 1차 적용 후 지원금 잔액발생시 비례배분 재적용 ↓ [인센티브 지급]

### ① 부산지역 업체(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증 상 부산등록)

■ 지원금액 : 숙박일수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차등지급

- 1박 1.5만원, 2박 2.5만원, 3박 이상 3만원(1인 기준)
- 분기별 최대 15백만 원 (₩15,000,000) 한도 내 지급

※ 단, 수학여행객은 1박 이상/ 1인 5천원 지원

■ 신청기간 :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접수(단 4/4분기는 12월 6일까지)

※ 1분기 : 4/20, 2분기 : 7/20, 3분기 : 10/20, 4분기 : 12/6

■ 지급시기 : 신청접수 후 한달이내(단, 소요예산 초과시 비례배분 조정지급)

## ② 타지역 업체

■ 지원금액 : 숙박일수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차등지급

- 1박 1만원, 2박 2만원, 3박 이상 3만원(1인 기준)
- 분기별 최대 10백만 원 (₩10,000,000) 한도 내 지급
- ※ 단, 수학여행객은 1박 이상/ 1인 5천원 지원

■ 신청기간 :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접수(단, 4/4분기는 12월 6일까지)

※ 1분기 : 4/20, 2분기 : 7/20, 3분기 : 10/20, 4분기 : 12/6

■ 지급시기 : 신청접수 후 한 달 이내(단, 소요예산 초과시 비례배분 조정지급)

## ③ 부정기 해외항공(전세기) 유치 인센티브

■ 기 간 : '19. 1. 1 ~ 12. 6

■ 대 상 : 관광진흥법 제3조 일반여행업체, 항공사

■ 운항형태 판단 : 국토해양부 운항허가서 기준

■ 지원조건

- 김해국제공항 도착 전세기 관광상품으로 부산↔외국간 부정기 (전세기) 계약을 체결 후 외국인 관광객 100명 이상을 유치
- 부산시내 관광숙박업체에서 1박 이상 숙박
- ※부산시내 관광숙박업체 : ㉠ 에서 명시된 숙박업체
- 부산 시내 숙박 1박당 부산체류 증빙서류 제출 필수 (숙박 인보이스와 결제 영수증 제출 필수 → 증빙서류간 금액 일치)
-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증빙 필수

■ 지원금액

- 김해공항 도착편에 한해 편당 외국인 탑승인원에 따른 차등지원, 분기별 1천만 원 한도

탑승인원(명)	100~149	150~
지원금액	4백만 원	5백만 원

- 수학여행객의 경우 위 지급 기준의 50% 지급(부산/타지역 동일)

- 신청방법 : 전세기 운항 전 운항계획 제출, 운항 후 결과 제출
- 지급시기 : 운항결과 접수 후 한달 이내(단 소요예산 초과시 비례배분 조정지급)

#### 4 인센티브 지급 공통조건

##### ■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

- 관광통역안내사, 투어코디네이터(TC), 기사 등 여행사 및 항공사 관계자
- 부산광역시·군·구 및 부산관광공사 타부서 (ex. 컨벤션뷰로)의 유사한 성격 행·재정적 지원을 받은 각종 행사나 투어
-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
- 공사 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지급 신청을 한 사업체는 2년간 지급 제외, 공사 홈페이지 내 명단 공개
- 해당 부산여행상품 이용 관광객의 불만, 제반 법규 위반 등 문제 발생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- 전세기의 경우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시기 협의 가능

※ 체류형 인바운드 상품과 전세기 유치는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(업체가 선택).

#### 5 서류 접수

■ 서류 접수 문의 : 부산관광공사 ☎ (051)780-4129

■ 신청방법 : 온라인 이메일 접수

※접수 후 유선으로 메일 수령여부 확인요망

■ 이메일 주소 : [bto@bto.or.kr](mailto:bto@bto.or.kr)

## ■ 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
숙박 인센티브	공통 서류	1.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(붙임 1) 2. 인센티브 상세 내역 (붙임2 - 엑셀) 3. 신청 업체 명의 통장 사본, 사업자등록증, 관광사업등록증 각 1부.
	증빙 서류	[중요] 붙임2-엑셀 「세부내역 쉬트」의 제출번호 → 증빙서류 상단부에 기입하여 제출 4. 호텔 발행 인보이스 (자체양식). 5. 호텔 결제 영수증 (원본 스캔). ※ 영수증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6. 해당 투어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 각 1부 (원본 스캔). 7. 외국인 단체관광객 숙박자 명단 각 1부 (자체양식). 8. 행사지시서 각 1부 (자체양식).
전세기 인센티브		[숙박 인센티브 서류 1~8번 공통 제출] 9. 부정기 해외항공(전세기)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(붙임3). 10. 전세기 운항계획서 1부 (붙임4). 11. 전세기 운항상황(결과)1부 (붙임5).
지원확정 후 서류		세금계산서 1부(서류 접수 및 금액 확정 후 제출).



## ⑥ 접수 시 유의사항

■ 온라인 접수방식 변경 : 등기접수 불가

■ 파일 전송 시 저장방법

① 붙임 1, 붙임 2 : 작성⇒저장 [파일명:회사명 표기]

② 모든 증빙서류의 상단 부분 제출번호 기입 ⇒ 제출번호 ZIP파일로 송부

※제출번호란? → 붙임2-엑셀 「세부내역 슈트」의 행사별 분류를 위해 기록하는 번호	<b>제출번호</b>
	OO여행사-01
	OO여행사-02
	OO여행사-03

→ 인보이스, 결제영수증, 가이드자격증, 숙박자명단, 행사지시서 묶음

→ 제출번호 별로 증빙서류 묶음 파일 송부

→ 저장 [파일명:OO여행사-01, 02, 03.... 표기]

→ ex) 3개 행사인 경우, 제출번호는 OO여행사-01, OO여행사-02, OO여행사-03

③ 전세기 인센티브의 경우, [붙임 3~5]+[증빙서류] ②방식으로 ZIP파일 송부

## 7 문의 및 기타

■ 문의처 : 부산관광공사 ☎(051) 780-4129

■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■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■ 본 계획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관광공사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.

2019. 6

# 부산관광공사 사장